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7
----------	------

발의일 : 2016. 3. .

발의자 : 김주은·김재열·강한옥·김성근·서정택·
김현상·전갑봉·이봉준·최민규·황동혁·신희근

1.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16. 3. 9 ~ 3. 14

(3) 규제사무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를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p>	<p>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p>

현 행	개 정
<p>【별지서식 1】</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선 서(기관장)</p> <p>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u>기관장으로서</u>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p> <p>동작구의회회장 귀하</p> </div>	<p>【별지서식 1】</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선</p> <p>본인은 서울특별시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p> <p>20 년 월 일</p> <p>소속 : 직위 : 성명 :</p> <p>동작구의회회장</p> </div>

현 행	개 정
<p>【별지서식 2】</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선 서(증인)</p> <p>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동작구의회위원장 귀하</p> </div>	<p>【별지서식 2】 (삭 제)</p>